



제438회국회(임시회)
제 2 차 정 무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절차 개선 〉

■ 김남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65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안자 : 김남근의원 등 17인
2. 제안일 : 2026. 4. 7.
3. 회부일 : 2026. 4.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법 제173조의2제2항(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영향을 미치는 정보누설),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제176조(시세조정), 제178조(부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 제2항에서 위 위반행위로 인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에게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한 뒤에야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차원의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적 제재도 한없이 장기화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행정벌과 형사처벌은 법적 성격과 제재 목적을 달리하는 독립적인 제재수단이고 그 적절한 제재 시기와 불복방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벌을 형사처벌의 후속 작업으로만 행사하는 것은 행정적 제재수단을 위법·

부당하게 운용하는 것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세조정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엄벌에 처하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적시에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제재하지 못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형사처벌의 후속 작업으로 운용한다면 위와 같은 자본시장 질서의 신뢰회복 정책을 실현하기 어렵게 됨. 이에 금융위원회가 시세조정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도 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07조제6항 및 제430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 또는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고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430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07조(이행강제금) ① ~ ⑤ (생략)	제407조(이행강제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30조(<u>제2항을 제외한다</u>)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 <u>제2항 및 제3항을</u> ----- ----- ----- -----.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② (생략)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금융위원회는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현행법은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누설 및 이용행위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²⁾, 시세조종행위³⁾, 부정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정보를 전달받은 자는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입안·수립 또는 집행하는 자
2.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생성·관리하는 자
3.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중개·유통 또는 검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제1항·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6.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제133조제1항의 공개매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매수를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개매수예정자”라 한다)가 공개매수공고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량취득·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가 제149조에 따른 공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향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래행위⁴⁾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⁵⁾과 함께 과징금⁶⁾을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짝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짝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 ③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 ④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항, 제177조 및 제443조제1항제7호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

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거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偽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3.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7.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거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10.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 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를 위반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자
3. 제176조를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 등을 한 자
4. 제178조를 위반하여 부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전 법률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제재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박탈을 위하여 2023년 법률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였음.

□ 한편, 현행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확인한 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 다만, 금융위원회가 검찰총장과 협의한 경우 또는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수사·처분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⁷⁾⁸⁾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제1항 또는 제445조제22호의2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물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 그런데, 이와 같이 현행 법령이 수사·처분 결과를 확인한 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수사나 형사재판이 장기화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도 함께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고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

것으로 협의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수사·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검찰총장이 수사·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결과 확인이 지연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 나. 수사·처분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수사·처분결과와 배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8) 참고로, 2025년 7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한 이후 1년간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 내부자 거래 등 10여건의 사건을 적발·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이 중 2건에 대하여 과징금을 선제적으로 부과하였음. (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보도자료, “‘원팀’으로 뭉친 합동대응단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습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 2026. 7.

< 합동대응단 주요조사 사례 >

□ 공동조사 사례

- ①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대형학원·병원장 등이 거액의 자금과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하여 상장사 주식을 장기간 시세조종 → 검찰 고발·통보(15명) 조치
- ② (증권사 임원 내부자 거래) 증권사 고위 임원이 업무상 지득한 ‘공개매수’ 미공개 정보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지인에게도 전달하여 수십억원대 부당이득 취득 → 동 임원 및 관련자 검찰 고발(8명) 및 과징금 부과(8명) 등 조치
- ③ (기자 선행매매) 언론사 기자들이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 보도 전 미리 주식을 매수, 보도 후 주가 상승 시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 취득 → 조사진행중

□ 과징금 부과 사례

- ① (공시담당자 미공개정보 이용) 호재성 내부정보를 직무상 취득·이용한 상장사 공시담당자 등 혐의자 2인 검찰 고발·통보 후 검찰 협의를 거쳐 과징금(10.8억원) 부과
- ② (내부자 미공개정보 이용) 호재성 내부정보를 직무상 취득·이용한 상장사 내부자 혐의자 1인 검찰 고발·통보 후 검찰 협의를 거쳐 과징금(4,860만원) 부과

□ 기타 주요조사 사례

- ① (공시대리인 미공개정보 이용) 코스닥 공시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시대리업체 대표 등이 업무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정보 이용 → 검찰 고발·통보(3명) 조치
- ② (분할 재상장 부정거래) 상장사 경영진 등이 분식회계로 부실을 숨긴 채 자회사를 고가에 매각하여 재무상태 개선 외관을 형성. 이를 통해, 동사 주식의 분할 재상장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상승하자 주식을 매각하여 부당이득 취득 → 검찰 고발(4명) 조치

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적시성을 제고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이와 같이 금융위원회가 검찰의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고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이익(행정제재의 적시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과 제한될 수 있는 이익(제재처분의 신뢰성 및 피제재자의 권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수사 또는 형사재판의 장기화와 관계없이 금융위원회가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제재를 가능하게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과징금 부과 기초가 된 사실인정 또는 법률적 판단이 검찰의 수사 결과 또는 형사재판 결과와 달라지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처분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피제재자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현재 법률상 형사절차의 종료를 과징금 부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하위규정인 시행령에서 원칙적으로는 검찰총장에게 수사 또는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한 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진행중인 형사사법체계 개편논의를 보아가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필요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차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현행법령에서도 검찰과 협의한 경우 또는 수사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과징금의 선행 부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현재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이 과정에서 현행 과징금 부과절차를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⁹⁾

-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형사절차에서 '혐의없음' 등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위해서는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형사절차 종료 전에 경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제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형사절차와 분리하여 과징금을 우

9) 또한,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가 2024년부터 시행된 초기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선 부과하는 것은 자본시장 제재체계의 균형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행정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나 진술 등이 이후 형사절차에서 피제재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제재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11